

## 國立公園內 私有林買收 적극추진

山林廳은 금년부터 國有林 擴大計劃의一環으로 20個所의 國立公園에 편입된 山林(公園內 山林面積: 351,146ha) 가운데 私有林(公園內 私有林面積: 139,864ha)을 希望者에 한해 買收하여 國有林에 編入시켜 나가기로 했다.

○山林廳에 의하면, 公園內 사유림은 自然公園法에 의한 伐採等 산림사업이 제한되고 있는데도 국가차원의 補償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山主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山林廳이 國立公園內 私有林을 사들이게 되면 산주들의 불만이 크게 解消되는 한편, 국유림 확대 집단화의 목표를 早期에 달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또한 山林法에 의한 制限林外에 他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私有林까지도 매수하게 된 것은,

최근 山林의 기능이 木材生產等 經營的인 면보다도 公害 및 旱水害防止와 國民休息空間 提供等 公益的인 가치가 더욱 증대되어 가는 추세로서, 국유림 확대의 목적도 산림의 經營的機能과 公益的機能을 함께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비록 山林法이 아닌 他法에 의한 法定制限林이라 하더라도 山林行政機關에서 매수하여 산림자원 증식과 公益의 이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유림 확대 목적에 합당할 뿐 아니라,

山主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輿望

을 실현하는 것은 부처를 가리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法定制限林으로 指定되어 制限을 받고 있는 山林은 公園(國立·道立·郡立公園),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保安林, 文化財保護區域等 10餘種에 約 2,000千ha에 달하여 全國山林의 30%를 넘고 있는 실정으로서,

保安林, 天然保護林等 山林法上의 制限林은 이미 경영적지부터 매수하고 있으나, 他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모든 法定制限林까지도 일시에 買收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奧地山林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國立公園內 사유림부터 매수하면서 餘他 法定制限林도 여전히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山林廳이 漸進的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山林廳에서 '91년도의 국립공원내 私有林買收는 기준의 民有林買收 예산을 활용하여 山主가 희망하는 山林中에서 적지를 골라 2년간 民有林買收 計劃量(9,000ha)의 50% 범위내에서 매수할 計劃이며, '92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推進해 나갈 계획이다.

山林廳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山林面積의 20%에 불과한 國有林面積을 203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림 확대 집단화 長期計劃을 수립하고 1988년부터 적극적으로 公·私有林을 買收하여 왔다.★